

정 관

사단법인 제주스타트업협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협회의 명칭은 '제주 스타트업 협회'라 한다.

제 2 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두고, 필요한 곳에 연구소 및 지역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제주스타트업협회(이하 "협회")의 목적은 제주도 스타트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고, 스타트업 업계의 공동이익을 대변하기 위함이다.

제4조(사업)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연구/개발]

1. 스타트업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과의 업무제휴 및 공동사업 전개
2. 스타트업 관련 자료의 수집, 분석과 조사연구 및 간행물의 발간
3. 인재양성을 위한 연수, 교육사업 및 학술행사

[연대/제휴]

5. 협회 회원간 정보의 교환/제휴/연대
6. 협회 회원들의 권익 보호

[대정부/지자체/대언론]

7. 스타트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규제철폐
8. 스타트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대정부 정책건의 및 전문가 그룹 활동 지원

9. 스타트업의 엑셀러레이팅을 위한 모든 활동 및 운영, 홍보, 보도자료 지원
10.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을 위한 정부/지자체 용역사업 및 운영사업

[기타]

11. 기타 포럼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

협회의 회원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은 제주도를 소재지로 한 스타트업 법인 및 단체,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또는 개인으로 협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의 가입 승인을 득한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본 협회에 관심이 있는 스타트업과 관련된 법인 및 단체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또는 개인으로 협회 활동에 뜻을 같이 하는 자로 한다.
3. 특별회원은 본 협회에 관심이 있는 지자체, 학계, 언론계, 전문가 그룹에서 종사하는 자로 한다.

제 6조(가입 및 탈퇴)

1. 정관 제3조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회원이 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협회는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가입 시킬 수 있다. 입회자격을 취득하면 회원이 된다.
2. 회원은 제9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협회에 손해 등을 끼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또는 본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을 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3. 회원이 본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에게 탈퇴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탈퇴하였을 때는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4. 회비를 1년이상 미납하고, 3회 이상의 독촉 공문을 발송하여도 납부 하지 않을 때 또는 사업등록이 취소되거나 폐업한 때에는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제 7조(권리와 의무)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협회가 행사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2. 선거권과 피선거권
3. 협회가 진행하는 엑셀러레이팅 및 운영, 홍보에 우선 참여
4. 정관 및 각종 회의에서 결의된 규정의 준수
5. 회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등록비 및 회의의 납부

제 8조(회 비)

1. 협회의 회비는 입회비, 연회비 및 특별회비로 한다.
2. 협회는 회원의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회비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3. 회비의 납부방법과 금액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임원

제 9조(임원)

본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본 협회 임원은 회장은 1인, 부회장 1인 이상, 이사 5인 이상(회장, 부회장 포함) 과 감사 1인으로 구성한다.
2.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과 감사 1인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다.
3.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며 비상근직으로 한다.

제 10조(임원의 자격 및 직무)

1.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업무 및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결원 시 대행한다.
3. 감사는 본 협회의 재정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 표결권은 없다.

제 11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보선하며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장 총회

제 12조 (총회)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제 13조 (구성)

1. 총회는 정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각 정회원의 표결권은 하나로 한다. 단, 출석할 수 없는 정회원이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제 14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변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2. 회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4. 협회의 해산결의에 관한 사항
5. 예산과 결산의 승인 등 일반회계에 관한 사항

제 15조(총회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회계 연도 초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시 소집한다.
 2. 회장은 총회를 소집 할 때에는 안건을 명시하여 10일 이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3. 감사는 긴급을 요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4.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 16조(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원 된다.
2. 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된다.

3. 정관의 개정은 출석회원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 된다.
4.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서면으로 대신 할수 있으며 위임할 경우에는 출석으로 간주 할 수 있다.

제 17조 (회의록)

총회의 의사진행에 대해서는 그 경과내용 및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 운영위원 전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 18조 (운영위원회)

본 협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구로써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 19조(운영위원회 구성)

1.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운영위원은 “당연직운영위원”과 “지명직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3. 임원인 회장과 부회장 그리고 각 업종별 분과위원장은 “당연직운영위원”으로 참여하며, 회장이 각 업종별 분과위원회에서 추천한 1인은 “지명직운영위원”으로 참석한다.

제 20조(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의결 및 위임 받은 사항
4. 예산 및 결산심의와 회비의 책정
5. 분과 운영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자격심사 및 상벌에 관한 사항
7.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직책에 관한 사항
8. 각 세칙에 관한 사항
9. 기타 본 협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21조(소집)

1. 운영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2. 정기운영위원회는 정기적으로(4/4분기) 소집하고 임시운영위원회는 필요 시 회장이

소집하며 재적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요구할 때 개최된다.

3. 감사는 긴급을 요하는 중대한 사유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임시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4.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 22조(의결 정족수)

1. 재적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된다.
2. 운영위원회의 의사는 출석운영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위임할 경우에는 출석으로 간주한다.

제 6장 업종별분과위원회

제 23조(목적)

1. 업종별분과위원회(이하“분과위원회”라 한다)는 해당 업종을 대표하며, 해당 업종의 건전한 발전과 현안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이를 추진한다.
2. 분과위원회는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업종간 화합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전개 함으로서 제주 스타트업의 성장·발전과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제 24조(구성 및 운영)

1. 분과위원회는 해당 업종별 회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 내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분과위원회를 갈음하게 할 수 있다.
2. 분과위원회의 임원은 위원장 및 운영위원으로 하며, 위원장 및 운영위원은 분과위원회에서 선출하고, 감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3. 분과위원회 임원의 임기는 본회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4.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여야 한다. 또한 위원장이 필요 시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분과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5. 분과위원회는 20개 이내로 하고, 분과위원회 구성의 최소 회원수는 10명 이상의 회원으로 한다.

제 7 장 사무국

제 25조(직 무)

1. 본 협회는 효율적인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의 직원은 사무국장 1명과 본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직원이다.
3. 사무국의 직원은 유보수 상근직으로 근무한다.
4. 사무국장의 인선은 협회의 임원진에서 결정하며, 2인 이상 다수를 추천 받아 그 중 1인을 임명한다.

제 8 장 재정 및 회계

제 26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준한다.

제 27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가입금
2. 회원의 회비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4. 협찬금
5. 사업수익금
6. 기타수입

제 28조(회비, 가입금 책정 및 징수)

1. 회원의 회비 및 가입금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2. 회원의 가입금은 가입과 동시 징수한다.
3. 회원의 회비는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해 분기별로 징수한다.

제 29조(재정관리)

1. 예산과 재정관리는 회장의 감독 하에 사무국장이 관리 집행한다.
2. 회장 유고 시 사무국장이 그 업무를 대행하고 감독업무와 병행하여 관리 집행한다.
3.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 30조(예산 및 결산)

1. 본회의 차기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은 12월까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 본회의 결산은 익년 2월까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1조(정관의 효력)

정관은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는 시점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초대 회장 및 운영위원)

초대 회장 및 이사진은 협회 발족을 위한 사전 회의에서 선정된 자로 한다. 이는 회의록에 기재하여 문서로 남긴다.

사단법인 제주스타트업협회 발기인 회의록

1. 회의일시 : 2017 년 7월 1일 (16 : 00~18 : 00)
2. 회의장소 : 재밋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7층앙로 14길 18
3. 회의안건 :
 - ① 임시의장선출
 - ② 발기인대표(의장) 선출
 - ③ 정관심의
 - ④ 이사장 선임
 - ⑥ 임원선임 및 임기결정
 - ⑦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 ⑩ 기타
4. 회원총수 : 8명 (“회원 명부” 참조)
5. 출석회원(발기인 포함) : 8명
6. 결석회원(발기인 포함) : 0명

<19시 30분 개회>

○ 발기인 홍민아 : 사단법인 제주스타트업협회 설립을 위한 발기인에 동의하신 5명의 회원 중 전원이 참석하였기에 지금부터 발기인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밋섬 대표이신 이재성 발기인을 임시의장으로 발기인총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라고 함”

그럼, 이재성 발기인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하며 발기인총회의 사회를 넘기겠습니다.

○ 임시의장 이재성 : 식순에 의해 발기인대표 선출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발기인께서는 추천하여 주십시오.

○ 발기인 이형문 : 그 동안 재밋섬 대표를 맡아 제주도 산업과 문화 활성화를 훌륭히 이끌어오신 오신 이재성 발기인을 발기인대표로 추천합니다.

○ 이재성 임시의장 : 이재성 발기인이 발기인대표로 추천되었습니다. 다른 분 추천 없습니까?

“ ‘없습니다’ 라고 함”

그럼, 이재성 발기인이 발기인대표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제부터 제가 의장으로 발기인총회 회의를 진행해 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성 : 그럼, 식순에 의거하여 사단법인 제주스타트업협회 정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관안은 미리 배포한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질의와 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발기인 육연정 : 기 제출한 정관안에 운영위원회의 권한 및 일상적인 운영결정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 의장 이재성 : 정관에 의하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총회가 연 1회 개최 개최되고 총회 결정사항인 회장 선출과 사업내용 승인 등 중요사항을 제외한 일상적인 권한은 운영위원회에 위임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선출되는 임원이나 차기 총회에서 선출되는 임원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됩니다.

다른 질문이나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 라고 함”

그럼, 제출된 사단법인 제주스타트업협회의 정관안을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 ‘예’ 라고 함”

사단법인 제주스타트업협회의 정관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으로, 정관 제8조 및 부칙 2조에 의하여 임원선출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관 제8조에 의하여 이사와 감사를 추천해 주십시오.

○ 발기인 홍민아 : 이사에 윤형준 제주패스 대표, 남성준 다자요 대표, 김형우 디스커버 제주 대표, 이재성 재밋섬 대표, 조희제 벤처스퀘어 제주에디터를, 감사에 고행선 회계사를 추천합니다.

○ 의장 이재성 : 다른 추천할 임원이 있습니까?

“ ‘없습니다’ 라고 함”

그럼, 사단법인 위례의 정관 제8조 및 부칙 2조에 의한 최초의 임원으로 추천

되신 이사 5인과 감사 1인의 선출에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라고 함”

사단법인 제주스타트업협회의 최초 임원으로 윤형준, 남성준, 김형우, 이재성, 조희제, 고행선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새로 선출된 이사 중 대표의 선출은 정관 제8조 및 부칙 2조에 의하여 이사 중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의 호선을 위해 잠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 30분 정회>

새로 선출된 이사 중 대표의 선출은 정관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 30분 정회>

<20시 40분 속계>

○ 의장 이재성 : 발기인총회 회의 속계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후 소집된 이사회에서 윤형준이 회장으로 호선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산목록 확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산목록은 기 제출된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질의응답과 의견을 받겠습니다.

“ ‘없습니다’

라고 함”

그럼, 재산목록 확인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으로 사업계획 및 수입과 지출 예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와 응답, 의견을 받겠습니다.

○ 발기인 홍민아 : 기 제출된 사업계획에서 사단법인 위례의 올해의 주력사업을 무엇으로 하였는지, 주력사업을 위한 예산반영은 어떻게 되었나요?

○ 발기인 조희제 : 사단법인 제주스타트업협회의 올해, 그리고 향후 주력사업은 스타트업 회원사 빅데이터 및 공공데이터 교육, 스타트업 인턴 프로그램 개발, 서울-제주 스타트업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를 계획하고 있고, 예산에 반영시

켰습니다.

○ 의장 이재성 : 다른 질문이나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 라고 함”

그럼, 상정된 사업계획 및 수입과 지출 예산(안)은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발기인총회의 준비된 안건은 모두 마쳤습니다. 기타 안건 있습니까?

“ ‘없습니다’ 라고 함”

조희제 발기인께서 오늘 이후의 사단법인 설립 추진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 발기인 조희제 : 오늘 발기인총회에서 처리된 정관 및 회의록은 참석하신 발기인께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해 주시고, 인감도장을 날인해 주시면 부속서류와 함께 주무관청에 제출한 후 법인설립허가증이 나오면 법인명의를 입출금통장 개설 등 제주스타트업협회의 법적인 정리와 변경을 마친 후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치는 것으로 법인설립과정이 종료됩니다. 그 후 주무관청에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신청을 한 후 중소기업청의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 의장 이재성 :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발기인총회를 마친 후 법인설립신청과 등기 등의 모든 행정사항을 조희제 발기인께서 맡아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라고 함”

○ 의장 이재성 : , 참석하신 발기인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통과된 정관과 발기인총회 회의록에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주십시오. 이상으로 사단법인 제주스타트업협회 발기인 총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21시 10분 폐회>

위 발기인총회의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발기인 전원이 다음에 기명(서명)날인한다.

2013년 6월 19일

사단법인 제주스타트업협회

발 기 인 이 재 성 (인감)

발 기 인 조 희 제 (인감)

발 기 인 육 연 정 (인감)
발 기 인 흥 민 아 (인감)
발 기 인 이 형 문 (인감)

2017년 7월 1일

사단법인 제주스타트업협회

발기인 및 임원명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비고	
윤형준	761113-195131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위시티 블루밍 5단지 508동 402호	발기인 겸 회장	
남성준	741230-1932311	제주시 구남동 5길 34 302호	발기인 겸 부회장	
김형우	711122-1551211	경기도 파주시 교하로 70	부회장	
이재성	740904-1117527	제주시 관덕로6길 16, 4층	발기인 겸 부회장	
조희제	711026-1110213	제주시 외도동 부영1차 아파트 108동 404호	발기인 겸 이사	
고행선	761113-1951311	제주시 연신로 265 영평노브힐하우스 A동 202호	발기인 겸 감사	
홍민아	740815-2221150	서귀포시 솔동산로 26-10	발기인	
이형문	770812-1338811	제주시 서천길 5-1 106호	발기인	
육연정	860316-2163016	제주시 산지로 5-3 201호	발기인	

취 임 승 낙 서

본인들은 “사단법인 제주스타트업협회”의 회장, 이사, 감사에 선출되어 그 취임을 승낙합니다.

2017년 7월 1일

회장 겸 이사 윤 형 준

이 사 남 성 준

이 사 김 형 우

이 사 이 재 성

이 사 조 희 제

감 사 고 행 선

사단법인 제주스타트업협회 귀중